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03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노종면·황정아·김성환

박홍배 • 김윤덕 • 김교흥

문금주 · 소병훈 · 박 정

박상혁 • 허종식 의위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요구에 행정부가 성실하게 응 하게 하여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구) ① ~ ⑤ (생 략)	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		
	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		